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24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1. 24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사회복지과장 정 이 환
- 나. 제안사유

- 영세민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조례중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「연5%」를 「연2%」로, 연체율은 「연15%」를 「연10%」로 인하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중 “영세민”을 “저소득주민”으로, “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%”를 “융자금에 대한 아지는 연2%”로, “연15%”를 “연10%”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로 개정. (안제1조, 안제2조, 안제4조, 안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‘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’에서 ‘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’로 바꾸고,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조정한 것입니다. 이 이자율 조정문제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중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된 부분입니다.
조례개정상의 절차상,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부 :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2025년 12월 15일 화순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함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를 “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로 한다

제1조 및 제2조중 “영세민”을 “각각 ”저소득주민“으로 한다.

제4조 제3항중 “연5%”를 “연2%”로 하고 “연 15%”를 “연 10%”로 한다.

제8조중 “영세민”을 “저소득주민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,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<u>영세민</u>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저소득주민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금구성)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. 다만, <u>영세민</u> 생활안정 등 기타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기금구성) ----- ----- <u>저소득주민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융자금액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<u>연5%</u>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. 다만, 상황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%의 이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융자금액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연2%</u> ----- ----- ----- <u>연 10%</u> ----- -----</p>
<p>제8조(특별회계의설치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<u>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</u>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8조(특별회계의설치) ----- ----- <u>저소득주민</u> ----- ----- -----</p>